



농림자료실



0012998

00

22.1
239

Contents

2007 달라지는 농정

2



01 FTA와 DDA 협상,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4



02 개방확대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14



03 우리 농업의 생명인 쌀 산업,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요

22



04 농축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요

27



05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요

40



06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요

48



2007 달라지는 농정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2007년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쌀 표시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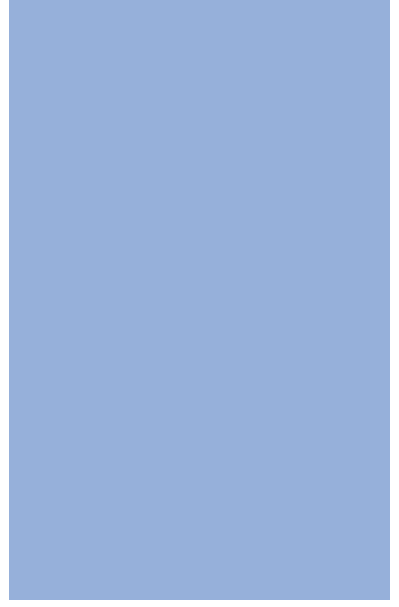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

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늘어납니다.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육지와 도서개발 촉진법상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것을 2007년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적용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3월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됩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됩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 농가 등이 사업 대상입니다.

농촌지역 여성 이민자 지원 사업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 교육과 생활 상담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가축 적정사육 밀도 준수 의무화

축산업 등록농가는 2007년부터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밀집사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수 의사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농지내 축사 설치 허용

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06년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7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됩니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2007년부터 면적이 300㎡을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연차적으로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08년부터는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01

FTA와 DDA 협상,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DDA란?

Doha Development Agenda 의 약자로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 개방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며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국가경제 발전 위한 새로운 무역질서

농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FTA와 DDA는 어떤 형태로든 무역자유화의 폭을 현재보다 넓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적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은 FTA 체결경쟁을 벌이면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는 시장개방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사형선고’로 불렸던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FTA 등의 시련에도 당당히 이겨냈던 우리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FTA나 DDA협상을 무조건 두려워 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단됐던 DDA 협상 재개

쟁점별 입장 비슷한 나라와 공조

DDA 협상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 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지난 7월24일 이래 잠정 중단되었으나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현재는 협상이 재개 되었습니다.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초에 스위스 다보스포럼 기간중 소규모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DDA 협상에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DDA는 그 동안 농업 시장접근, 농업 국내보조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3대 축에서 주요국 간 대립 국면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우 민감·특별품목, 새로운 블루박스 규율 방안 등, 비농산물 분야의 선진·개도국 관세감축 폭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여부가 세부원칙 타결의 관건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쟁점별로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의견 수렴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와 FTA 체결

ASEAN, 인도, 캐나다, 일본, 멕시코, 미국과 추진 중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싱가포르, 유럽 강소국인 EFTA와 FTA를 체결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등과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체결 후 발효된 FTA

한 · 칠레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2004년 4월1일에 발효됐습니다. 농업분야는 쌀 등 민감농산물 400여개의 예외를 확보함으로써 농업분야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포도 등 일부 과수품목과 돼지고기 등 개방품목에 대하여는 1조 2,000억원의 FTA기금을 설치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 · 싱가포르 FTA

2003년 양국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에 타결되었고 2006년 3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싱가포르는 농업국가도 아니고 실제 협상결과 대부분의 민감 농산물이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한 · EFTA 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과의 협상으로 2005년 1월에 개시하여 2005년 12월에 타결되었으며, 2006년 9월부터 발효됐습니다. EFTA는 지리적으로 멀어 수입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협상결과, 대부분의 농산물이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업분야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

한 · ASEAN FTA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ASEAN 10개국과의 협상으로 2006년 4월 제11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관세 인하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우 쌀,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 고추, 마늘, 양파 등 71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고 인삼, 분유, 혼합조미료, 화훼류, 땅콩 등은 10년이후 1/5수준으로 감축했습니다. 또한 옥수수, 오렌지주스 등은 10년간 현행관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국회비준동의가 잘 마무리되면 2007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 캐나다 FTA

금년말 타결을 목표로 2005년 7월 이후 2006년 11월까지 8차례 협상이 진행중이나 농산물 관세철폐 수준에 대한 양측 기대가 달라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감품목 중 캐나다가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축산물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수입쿼타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관세 인하방식을 검토중입니다.

한 · 인도 FTA

2007년말 타결을 목표로 2006년 3월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하고 협상 문과 상품의 관세인하 방식 및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 모두 농업을 민감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인도가 쌀 수출국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분야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 일본 FTA

2003년 12월 이후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일본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 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한 · 멕시코 FTA

2006년 2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3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측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한 · 미 FTA

정부 내에서도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논의돼 오다가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2006년 2월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협상은 6~8주 간격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2006년 12월 현재 5차 협상까지 열렸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경과

협상은 6~8주 간격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열린 1차협상은 미국에서, 7월의 2차협상은 한국에서, 9월의 3차 협상은 미국에서, 10월에 열린 4차협상은 한국에서, 12월에 열린 5차 협상은 미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5월 중순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6, 7월에 1,2차 협상을 통해 양측의 주요 제도 및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8월 15일에는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고, 9월 6~9일 개최된 제3차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품목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10월23~27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4차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정 양허안을 교환하고 농업분야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습니다.

12월4~8일까지 미국 몬타나에서 열린 제5차 협상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측은 그동안 품목별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파악한 품목의 민감도를 설명하고, 미측이 민감 품목에 대해 신축적 입장을 보여야 협상 진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 주요 쟁점

양허안 관련 쟁점

양허 수준 우리 측은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기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철폐 이행기간 우리 측은 민감 농산물에는 장기간의 관세철폐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대부분의 품목들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정문 관련 쟁점

농산물 특별긴급관세(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도입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원충장치로서 미국과 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대상품목, 발동기준 선정방식 등은 향후 품목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수입쿼타(TRQ) 관리 미국 측은 우리 수입쿼타 관리방식에 불만을 표시하고 수입쿼타에 대해서 국영무역 배제 및 수입부과금 금지를 주장한 반면 우리 측은 품목 특성 및 시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입쿼타 관리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대응 방향

쌀은 개방에서 제외, 품목별 민감도 감안, 협상 전략 차별화

한·미 FTA 타결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농업분야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 농업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한다는 원칙에 따라 식량안보와 농가경제측면에서 중요한 쌀은 개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쌀 이외 다른 품목들도 민감성에 따라 관세감축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수입쿼타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특히 협상과정을 국회와 농민단체에 정확히 알리는 등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허안 작성 등 주요한 사안에 품목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새로운 FTA협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분야 FTA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등 농업분야의 자체 협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FTA

EU, 중국과 협상 추진 여부 검토 중 농업 민감성 최대한 반영할 터

한·EU FTA

2006년 7월과 9월에 2차례 예비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양측에서 FTA협상 출범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07년 3월중에 한·EU FTA 협상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EU는 돼지고기, 포도주 등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 농업계로서는 어려운 FTA상대입니다. 정부는 실제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중국 FTA

중국과의 FTA는 그동안 양측 연구기관끼리 민간차원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2007년부터는 정부가 참여한 산·관·학 공동연구단계로 한단계 논의수준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산·관·학 공동연구가 1년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실제 본 협상은 2008년 이후에나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산·관·학 연구단계에서부터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고 우리 민감농산물은 상당부분 예외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Q & A

Q. 왜 하필 미국과 FTA를 추진하나요?

A. 미국은 단일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이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시장입니다.

미국과의 FTA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성장을 위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사형선고'로 불렸던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FTA 등의 시련에도 당당히 이겨냈던 우리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한·미FTA를 무조건 두려워 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Q. 한·미FTA 타결시 농업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한·미FTA가 타결되면 농업분야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의 주장처럼 농업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해석은 과장된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2조 2,800억원에서 최소 1조 1,500억원의 농업생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축산과 과수부문, 식용콩 등 일부 곡물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채소, 화훼부문은 영향이 적을 전망입니다.

특히 실제 협상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확한 피해규모는 협상이 끝나야 계측이 가능할 것이며, 피해규모는 분석유형과 가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정밀한 피해 계측을 위해 앞으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협상진행 상황을 반영해 나가면서 품목별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Q. 피해분야 대책은 충분히 마련돼 있나요?

A. 농업분야 개방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늘려나갈 것입니다. 개방에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천천히 개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한·칠레 FTA체결당시 4대 특별지원법과 농가지원을 위한 기금(2004~2010년까지 7년간 총 1조 2,000억원)을 이미 조성했으며 앞으로 더욱 늘려갈 것입니다.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등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수출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해 수출을 늘려갈 것입니다.

Q. 미국은 쌀 수출국인데 쌀이 개방 예외 품목으로 가능한가요?

A. 쌀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및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과제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2004년 어려운 쌀 협상도 한 것이며 미국도 협상 당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예외없는 시장개방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예외없는 FTA는 없으며 과거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협상에서도 미국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한 예외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적극 부각시켜 미국 측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Q. 한·ASEAN FTA가 타결되었는데 농업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A. 당초 협상 시작시 농산물 강국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부분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쌀,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의 민감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한·미 FTA협상에서 농업인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하여 나갈 계획인가요?

A. 정부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 현장에 농민단체 대표를 동행하여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협상의 전 과정에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DDA, FTA 협상 추진시 농업인대표가 사전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중요한 협상 국면에서는 협상 현지에 농업인 대표가 동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한·미 FTA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EU FTA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유럽연합은 FTA체결 효과가 미국 못지않게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우리 상품의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유럽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업분야는 EU측도 민감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EU와의 협상에서 민감한 농산물도 돼지고기와 포도주 등 일부 가공품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EU와의 FTA협상이 시작되면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감 농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최대한 얻어내어 농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Q. 중국과 FTA를 하면 우리 농업은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A. 정부도 중국과 FTA 논의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중국측에서 지속적으로 FTA협상개시를 요청해 왔음에도 우리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 확보를 FTA 개시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개시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중국과 FTA를 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2

개방확대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으나요



그동안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및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정부는 2004년 2월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원칙아래 FTA, DDA협상, 쌀 협상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년간 총 119조원이 지원되는 방대한 투융자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시 근본적인 농업희생대책 수립에 대한 국회·농업계의 요청과 DDA 농업협상, 한·미 FTA 협상 진행 등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점검, 평가하고 보완하여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소득, 영세 고령농은 복지

고객 중심의 농식품 · 농촌정책 강화키로

먼저 농촌경제연구원,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품목별로 생산량과 수출입 영향 등을 망라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협상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품목별 민감도를 바탕으로 협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협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상 시나리오 별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 · 농촌종합대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 품목 단위의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경영체단위 직불제로 전환하는 등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반면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를 추진하는 등 직불제를 보다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과 고령 영세농 등 농업인의 사정과 농가 경쟁력에 따라 꼭 맞는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농정은 단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농업 · 농촌 종합대책의 중장기 정책 기조 하에 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장기적으로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2007년에 농업계 · 전문가 등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조정과 병행하여 3년 주기로 맞춤형 농정 추진상황을 점검·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완하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선 한·미 FTA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FTA 특별법을 개정하고 FTA 지원기금을 확충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정하고 전업적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면서 고객중심의 농식품·농촌 정책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12월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단」을 구성하고, 정책 공모제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산지별로 분야별 토론회(채소, 한우, 도농교류 등)를 개최하여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협의회, 투융자평가협의회, 道 농정과장회의, 관계부처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투융자 조정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정책

위생·안전성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주식용 곡물자급률, 공급열량자급률 등에 관한 중장기 식량자급목표를 설정·점검하여 농업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농·식품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GAP, HACCP,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비료, 농약, 항생제 안전기준 및중금속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와 발전을 위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단체급식 등 대량수요처를 중심으로 한 우리 농산물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가칭) ‘식품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식품산업 육

성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

비농업분야와 소득 균형 이룰 수 있게 경영안정 지원 주력

전업적 농업경영체에 농업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이양 촉진과 고령농에 대한 복지대책 차원의 농촌형 특별소득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해 품목별 우수 품종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유통을 차별화하고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이에 따른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이 산지유통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책을 강구하고 생산자들의 시장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득 작목과 수출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종자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제, 농지은행제 등 위험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정책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시켜 생활 여건 개선, 소득원 확충, 복지 프로그램 강화

산업공간이면서 동시에 휴양공간으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향토산업, 농촌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등 농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업인 재해보험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을 돕기 위해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가 사정따라 ‘꼭 집어’ 맞춤형 지원

평균적 지원에서 벗어난 ‘선택과 집중’

UR이후 우리 농정은 영농규모화, 수리시설개발, 기계화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전체 평균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쟁력제고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체상태였던 농업부문 성장세가 1995년부터 회복되고 농산물의 가격인하로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은 과잉생산 되었고 시장은 개방되어 농산물 값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정부도 소득정책과 복지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다보니 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농가간의 소득격차도 커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시장개방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농업인은 소득이 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05년 통계에 의하면 농가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는 9.3배로서 도시가구 소득격차 5.4배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농정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정의 대폭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정 효율성, 농업인 만족도 끌어올리는 농정 대전환

맞춤형 농정은 글자 그대로 농가의 유형별로 적용 정책을 차별화하는 농정입니다.

전업농

농업소득 비중이 크고 경쟁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경쟁력향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규모화로 높아진 경영 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해보험, 부채관리, 자조금제도 등 위험 관리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현행 논농업중심, 특정 품목중심의 직접지불제도를 단계적으로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도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고령농

고령농 등 개방적응이 곤란한 성장한계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을 통해 은퇴를 하더라도 생계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 안 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농에 대해서는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 소득보조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업농

또한 취미나 부업으로 농업을 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불필요한 지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특성따라 자율적 선택 유도

정책공급 측면에서 전체 농림사업을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과, 법령·제도 정비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특히 현장과 괴리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사례를 최대한 발굴하여 맞춤형 농정 방향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정책수요 측면에서 개별 농가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농가유형 및 정책수요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농업계·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등 제도 기반 마련 농업통계 항목, 기준 개편도

우선 농업인의 경영상태 파악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자신에 맞는 농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유형에 따라 차별화 된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여부는 농가 스스로 선택 하며 미등록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적용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등록 정보의 범위는 신청사업에 따라 정해집니다.

농업통계도 정책적으로 분류한 농가유형별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통계항목, 통계기준 등 조사항목이나 방법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

Q & A

Q. 농림 예산과 119조원 투융자 계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농업·농촌지원 예산중 채무상환과 적자보전, 인건비 등 경직성 사업비와 3년 이하 회전성 단기 융자금을 제외한 투자·융자 사업비 개념입니다.

119조원 중 농림예산은 96조원이고 각종 기금이 23조원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교육부의 농림관련 예산 5조8,000억원도 포함돼 있으므로 농림분야 예산과 투융자규모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119조원 투융자 사업의 연평균 투자규모는 과거 42조원에 비해 2배 수준에 달합니다.

Q.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계획에 대해 불만이 있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A.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과거 42조원 사업과 달리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 지불 예산 등을 대폭 확대했으나, 개별농가당 보조금 감소 등으로 농가의 요구 수준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금 예산은 2002년 4,289억원에서 2006년 1조 9,441억원으로 늘어 호당 지원규모가 2002년에 33만5,000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52만7,000원 수준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직접 투융자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부문의 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Q. 맞춤형 농정은 과거 농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과거 농정이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이었다면 맞춤형 농정은 농가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맞춤식 지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즉 과거에는 농가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지지와 품목별 보전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맞춤형 농정에서는 농가의 사정에 따라 정책 목표를 달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 대상자와 제외할 대상자를 구분하여 최대한 배타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책 실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정책 대상자에게는 개방확대, 소득감소 등에 대응하여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개방시대에 적응하기 곤란한 성장 한계 계층에게는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Q. 맞춤형 농정으로 인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경우 정책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인 농업인과 소비자의 정책 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특히 고령농의 노후 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구조 개선이 선순환 시스템으로 변화하며, 규모화·전문화된 정에 인력 위주의 선진국형 농정구조로 전환될 것입니다. 또한, 농촌 양극화의 해소와 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업부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방안은요?

A.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경영 상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농가는 자신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여 자신에 맞는 농가 유형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도에서도 개별 농가에 대한 전반적 경영 상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농 규모가 크면서 소득과익이 가능한 농가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점차 적용 대상자와 정책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전 농정분야에서 맞춤형 농정의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03

우리 농업의 생명인 쌀 산업,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요



개방확대와 소비감소에 대비한 체질개선에 중점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보완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안정·쌀 시장안정화 등을 위해 쌀 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화 유예를 받은 10년동안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앞으로 외국 쌀과의 싸움에서 우리 쌀이 자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정제도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정부주도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뤄왔기 때문에 이를 시장지향적으로 재편하고 한편으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2005년 7월1일 시행)하여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 여건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양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DDA협상 이후에는 개방 폭이 늘어날 것에 대비, 종전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의 한계를 대폭 보완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2005년 7월1일 시행)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 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당해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 쌀의 밥쌀용 공급에 따라 양곡표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시장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비축제 도입, 추곡 수매제 폐지 등 양정제도 전면 손질

정부는 농업인·산지유통업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안을 조기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매입량은 350만석으로 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산물벼 100만석을 매입했고 조생벼 출하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산물벼 매입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포대벼와 산물벼의 매입가격 이원화로 인한 시장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산물벼에 대해서도 우선 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비축 매입가격은 WTO 허용보조 요건인 시장가격 매입을 적용하기 위해 2007년 7월 1월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산지 쌀값(10월~12월)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 절차 간소화 단가 올리고 지급 시기 앞당겨

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던 절차를 행정기관이 제시한 등록내용을 농업인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변동직불금 지급근거가 되는 벼 재배여부 및 농지변동 등의 확인기한을 8월 31일로 설정하여 직접직불금 수급권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에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직불금의 실경작자 지급을 위한 감시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자금이 많이 필요한 연말과 영농철에 직불금을 탈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시기를 당초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기고 고정직불금의 단가도 평균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변동직불금은 4월에서 3월로 지급 시기 조정)

소비자 맘에 쏙 드는 브랜드 쌀 키우고 시설 현대화 지원도

정부는 2006년 6월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0년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군 단위 대표 쌀 브랜드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RPC를 중심으로 품종·재배방법 등의 차별화를 통해 우수 브랜드를 정립한 후,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시설보완·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브랜드가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브랜드 쌀 평가, TV 홍보, 우수브랜드 포상금지급과 함께 공신력 있는 브랜드 인증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브랜드과워 향상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 통상마찰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산·외국산 쌀이 동시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시장·군수가 주도하도록 하여 브랜드 경영체를 통합하고 규모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위해 마을단위 10~50ha수준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쌀 품질별로 구분 관리하여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자체별로 시·군 단위 공동 브랜드 관리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쌀 브랜드 경영지침서를 제작하여 RPC·지자체·지역농협 등에 배부하고 수확후 관리 표준 메뉴얼도 제작 보급했습니다. 시·군이 제출한 브랜드 경영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가공 시설을 교체하고 품질 분석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 지원도 늘릴 것입니다. (8개소, 개소당 20억원, 국고 40%)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개소당 2억원,국고 50%)

Q & A

Q.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은 170,083원/80kg으로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되며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Q.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고정직불금이란 쌀의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 쌀가격 하락여부에 관계없이 대상농지에 대하여 지불하는 고정적인 돈으로 ha당 평균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변동직불금이란 전체 직불금액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돈으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공공비축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중에서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쌀을 매입·판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총 비축규모는 600만석 수준으로 운용(양곡연도말 기준)되며, 원칙적으로 연간 300만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쌀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2008년에 비축규모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04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농축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요

최근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매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선택기준은 품질이 아닌 안전성입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살기 위한 웰빙바람이 불어 오면서 소비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농식품과 농식품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농약, 비료사용 등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구입하는 농축산물이 농약이나 첨가물, 성장호르몬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원산지는 어디인지, 파종이나 입식단계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충족시키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 필수

빠르게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속에서 국내산 농산물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수입농산물보다 나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과중부터 수확까지 보다 발전된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안전한 브랜드 농산물을 육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맛있고 안전하면서도 몸에 좋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연구해 나가면서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기반을 규모화하고 이들을 전문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시설·운영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일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브랜드·공동마케팅조직 15개 조직에 2,094억원을 지원했으며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선별, 저장 및 상품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운영(10개 기관, 440명 교육)함으로써 브랜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영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해 채소류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수박, 딸기, 과실류의 경우 사과, 감귤, 배, 포도, 단감 등에 대한 브랜드 경영지침서를 제작·보급하고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표준매뉴얼을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GAP으로 지켜 수확에서 포장까지 위해요소 중점 관리

농산물

GAP제도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로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현을 위해 농협, 롯데마트, 이마트 등 민간 인증기관 21개소를 지정했고 신청농가 5,000호에 대한 교육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인증을 시작, 4,6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자(6,499명), 유통업체(211개소), 판매업체(466개소) 등에 대한 이력추적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력추적 관리제 인프라 조성, 2013년까지 등록비율 10%로 확대

이와함께 농산물의 이력서제도라 할 수 있는 이력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친환경인증 농산물이 수박, 딸기 등 42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지난해 8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시행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추적시스템을 통해 어떤 농산물이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www.agros.go.kr)'을 구축한 결과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에 표시된 이력추적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농약 등 농자재 사용 내역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생산자의 연락처와 홈페이지 등 상세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 6,488 농가가 등록돼 있습니다.

농림부는 개방화 시대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3년까지 과실, 채소 등 유통물량 중 이력추적 등록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나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GAP 위생시설 보완, 이력추적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에 3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약 안전성 검사기준 및 조사범위 확대

출하 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 이외에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기준 초과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44개 폐광지역(2005년7월 ~ 2006년8월 중금속 실태조사결과)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전에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하여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조금 지원 늘려 마케팅 돕고 사육에서 소비까지 HACCP 적용확대

축산물

축산물의 경우 브랜드 육성계획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축산물 브랜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34개에 1,04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4~2006년까지 73개 경영체에 2,55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 경영체를 중심으로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홍보를 비롯한 각종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191억원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육에서 소비까지 HACCP 적용 확대, 이력추적제 강화

축산물의 경우 사육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적용을 확대하여 도축장(139개소), 사료공장(47개소), 축산물 가공장(344개소), 판매업소(2개소) 등에 대한 지정을 마쳤으며 관련 지정 업무와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축산물 HACCP기준원을 설립했습니다.

2008년에 전면 실시되는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비하여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조, 식품위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닭·오리고기의 경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시행, 우선적으로 1일 8만수 이상 처리하는 도축장부터 적용하기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세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처벌 기준 강화해 불법 유통 차단

원산지 의무표기 대상 품목 늘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은 물론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도 유통과정상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표시 대상품목을 늘리고 허위표시한 사람의 경우 종전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었던 처벌기준을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병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 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물량이 100톤이상, 판매가격 환산액이 10억원(가공품은 20억원)이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일간신문에 시정명령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원산지표기 위반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되었으며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25,000명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전 세액 심사 대상품목 늘리고, 심사 품목 추가

수입 농산물의 경우 국산 농산물과의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유통과정에서 국산과 품질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밀수 등 부정 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수입업자들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중량을 초과해 선적하는 등 불법·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정부관계기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수입 농산물 통관·유통개선 T/F팀을 구성, 운영중이며 관세청에 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증원하여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불법·편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세액심사 대상품목을 2005년부터 13개에서 22개로 늘리고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냉동고추 등을 심사품목에 추가했습니다.

수입쌀 통관부터 소매까지 단계별 철통 감시

시판용 수입쌀은 전량 국영무역방식으로 공매를 거쳐 20kg, 10kg단위로 자유롭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판초기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수입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산망을 통해 공매, 낙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한편, 소매상까지 집중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전농 등 총 31개 생산자단체 19,059명, 소비자단체 5,186명, 영양사 등 1,108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범국민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하고 있는 자를 신고하면 단속, 수사결과, 위반물량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하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수입 위생조건 철저히 적용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

정부는 2003년 12월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BSE 감염 소가 발견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부터 1년 동안 국제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3차에 걸친 한·미 BSE 전문가 협의회와 미국 현지조사, 2차에 걸친 가축방역협의회 등 국내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지난 2006년 1월13일에 결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정부는 2006년 3월6일에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시행 이전인 19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미국의 광우병 방역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 내장 등 수입금지 물품이 검출되면 이같은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X선 전수검사 실시 위험 물질 원천 봉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기 위해 X선 이물검출기를 이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우병과 상관없이 잔류물질 및 미생물의 오염여부를 검사중입니다.

검사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검출되면 전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SRM을 제외한 뼈·내장 등 수입 금지물품이 검출될 때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재개된 이후에 3차례 수입되었으나 검역과정에서 뼈 조각이 발

건되어 불합격 처리되었고 해당 물량은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미국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제 기준보다 더 강력한 수입 위생조건

BSE는 보통 잠복기가 4년~6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8만9,000여 건의 BSE 발생 건 중 수십 건은 30개월령 이하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BSE 감염소의 경우에도 살코기에서는 BSE 원인체인 프리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이라는 우리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BSE 감염된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 가축의 질병과 예방에 대한 국제적 위생규칙을 만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협의한 결과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BSE 원인이체가 발견될 수 있는 부위는 특정부위에 한정되어 있고, 위험부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국제규정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기준보다 더 강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주요내용

- 수출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지육(carass)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을 말함
-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등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함
- 도축 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함
- 수출 쇠고기는 SRM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 한국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쇠고기 발견시 당해 수출 쇠고기 반송 또는 폐기처분, 당해 수출 작업장은 한국으로의 수출 선적을 잠정 중단
- 한국 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미국내 BSE 위험이 객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1998년 4월)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 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등

Q & A

Q.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이 까다로워 어려움이 많은데 이 제도가 농업인에게 주는 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이 제도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유통·판매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야 하고 생산자는 이력추적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에 관련된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다른 농산물과 구분하는 등 이력추적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제도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내가 구입한 농식품을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했는지,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쳐 왔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생산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명해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에 따라 우수농산물로 인증받으려면 생산자가 반드시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농약이나 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내역 등 농산물의 생산에 관한 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며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되어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Q. 품질인증제도가 있는데 GAP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나요?

A. GAP제도는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농산물의 품질 규격을 인증하는 품질인증과는 다릅니다. 또한 GAP제도는 농산물의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력추적 관리를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습니다.

Q. GAP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A. 우선 GAP인증을 받으려면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토양, 수질, 농약, 비료관리, 수확후 관리 등을 포함한 필수 76항목, 권장 34항목)에 의해 생산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수확 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체제를 갖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은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GAP인증 희망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재배예정지 지적도 및 인증품 생산계획서, 이력추적 관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 민간 인증기관(농관원 지정)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은 우수농산물 세부 심사 절차와 방법(농관원 고시)에 따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Q. GAP 인증을 받을 경우 혜택은?

A. 인증을 받아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직불금 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농가에게 GAP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인증기관 등을 중심으로 인증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들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농업인의 인증경비 경감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비의 일부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는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나 수입농산물에 비해 경쟁력이 강화되는 차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A.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 작물체의 원산지는 국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동충하초균을 접종한 후 동충하초를 생산하면 원산지가 국산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두릅대목을 수입한 이후 단순히 두릅순이나 두릅순의 일부를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는 중국산으로 봅니다.

가축의 경우 출생국으로부터 수입,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소의 경우 6개월, 돼지의 경우 2개월, 그 외의 가축은 1개월 이상 국내 사육기간을 거쳐야 국산으로 판정됩니다.

Q.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traceability)는 무엇이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A.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유통단계별로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도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판매업자는 판매단계에서 입고일자, 품목, 물량, 납품자를 기록·관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들이 구입하는 농축산물의 이력을 자세히 알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이를 역추적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수입 쌀은 식별이 가능한가요?

A. 시판용 수입 쌀은 중국, 미국, 태국, 호주로부터 수입되며 수입 쌀이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모선별로 견본을 수집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국 104개 출장소와 9개 지원 및 시험연구소에 시료를 배부하여 원산지 식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쌀 중 미국 쌀은 중립종으로 국산 쌀보다 쌀알이 크고 길이가 길며, 태국산 쌀은 장립종으로 쌀알이 가늘고 길어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나, 중국산과 호주산은 단립종으로 국내산과 비슷하여 육안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DNA 분석을 통한 식별방법을 개발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Q.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한·미 FTA협상과 연계된 소위 4대 선결 조건으로 추진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인가요?

A.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것은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인 2005년 2월부터로 국내 전문가들이 거의 1년여동안 국제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입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FTA와는 무관합니다.

Q.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살코기에서 광우병 원인체가 발견되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A. 전세계적으로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발생 사례가 극히 적고, 대부분은 유럽에서 동물성 사료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일부는 비정형 광우병입니다.

지금까지 광우병에 자연 감염된 소의 근육에서 광우병 병원체가 검출되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살코기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일부 연구결과가 있는데, 그것도 스크래피에 감염된 면양, 쥐 등 실험동물과 변형 크로이펠츠 야콥병(vCJD)을 포함한 크로이펠츠 야콥병(CJD)환자 등의 근육에서 변형프리온이 검출된 것입니다.

Q. 광우병 비발생국인 우리가 30개월 미만의 조건으로 협상한 것은 일본의 20개월 이하 조건과 비교할 때 잘못된 협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A. 국제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르면 30개월령 이하 소에서 생산된 뼈를 제거한(deboned) 골격근식육(살코기)에 대하여 수출국가의 광우병 상황에 관계없이 광우병과 관련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으며, 30개월령 이하의 살코기에 대하여는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일본의 조건과 직접적인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축 소 전체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하는 나라이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20개월령 이하 소에서 생산된 뼈와 내장을 포함한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아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특정위험 물질, 뼈 및 내장 등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도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05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축산업 생산액의 20% 수준이며, 인수 공통 전염병이 확산 되면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 기피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확보를 위해서는 가축질병 예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질병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방역은 농가와 지자체의 소독 예찰 등 차단 방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 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AI, 2월말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직·간접 피해농가 신속하고 다양하게 지원

2006년 11월 22일과 27일 전북 익산에서, 12월 10일 전북 김제, 12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및 오염지역(발생농장에서 반경 500m이내), 위험지역(반경 3km이내)에서 사육중인 닭 등 가금(112만 1,000 마리)의 도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2006년11월~2007년2월)이 종료되는 2월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림부는 차관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검역원 전문가들이 역학조사를 추진중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살처분 대상농가는 물론 발생지역내 간접피해 농가들에 대해서도 살처분 보상금,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살처분 및
이동제한지역 농가

보상금 조기 지급, 생계안정자금 지원도

사육가축이 도살 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도살 처분후 수익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의 생계안정자금을 보조 지원하게 됩니다. 도살 처분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시가(최초 발생 7일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육계 kg당 가격 : (발생일전 7일 평균가격) 1,203원

가축방역관이 농가별 살처분 대상 가축의 일령과 종류(산란계·종계·육용계) 등을 확인하게 되면 시·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며, 시·군의 보상금 평가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 보상금의 50% 정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예비비 1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살처분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은 2003년 보다 30% 상승한 가구당 1,3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동제한 전 출하를 마치고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생계안정자금에 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동제한지역(오염·위험지역) 피해 농가의 재생산 여건 지원을 위해 가축입식비를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지원합니다.

주변경계지역 농가

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수매, 경영 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 이자 감면

AI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어려운 주변농가와 계열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경계지역(반경 3~10km 지역)**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경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나 계란 등은 농협을 통해 시가로 수매·비축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잠복기 등을 감안, 2006년 12월 중순부터 수매하고, 출하 적기가 지난 가금류의 경우 추가되는 생산비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 **방역조치지역(반경 10km이내 지역)**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도 면제합니다.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정책자금(농업경영자금, 농특자금, 축발자금, 부채대책자금, 농업종합자금 등)에 대해 상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3%)를 면제하겠습니다.

■ **방역조치지역 이외 지역** 익산시 관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등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 지역내의 축산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해주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 **계열업체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는 부회장, 도축가공장, 사료업체, 계열업체 등에는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의 경영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2013년 브루세라 완전근절 목표

살처분 보상금 낮춰 농가 책임의식 고취

부루세라병은 가축에게는 유·사산 및 불임증, 사람에게에는 감기와 유사한 호흡기의 증상을 나타내는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농림부는 부루세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사람의 감염을 막기 위해 농장 검색사업을 강화하면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사람의 감염실태 조사와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외국과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에는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라도 도축검사시 림파절 등 감염부위를 제거할 경우 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고기 식문화를 감안하여 양성반응 소 전체를 살처분, 매몰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한육우의 부루세라병 감염농장을 색출하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암소를 중심으로 검사를 해오다 2006년 7월부터 문전 거래 암소(암송아지의 어미소 포함), 1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 검사(연 2회),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검사(연 4회) 등 검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브루세라의 발생원인이 농가의 방역관리 소홀로 나타난 만큼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여 시가의 100%를 보상해주던 살처분 보상금도 11월부터 80% 수준으로 낮추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60%수준으로 감액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의무 검사대상에 거래 수소를 추가하고, 모든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전두수를 검사해 부루세라병 근절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완전히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항생제 남용 막고 분뇨 오염 줄여

2007년부터 적용, 모든 등록농가 지켜야

가축도 사람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되어야 질병도 없어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또한 두당 사육시설 면적을 넓혀 밀식으로 인한 분뇨오염을 막고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축산물내 잔류하는 항생제 성분이 사람으로 전이돼 질병치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사실상 인체 유해 항생제 내성균과 동물 유해 내성균간의 유전적 연관성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하에서 가축의 밀집사육을 막고 건강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 1월1일부터 축산업등록농가에 대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고시하고 지나친 밀집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축산업 등록농가가 적정가축 사육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법 제 47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축의 사육단계에서도 HACCP를 적용하는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배합사료내 첨가 항생제를 줄여나가기 위해 처방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항생제 잔류위반 식육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검사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고, 잔류위반시 농가출하 제한, 엄정한 과태료의 부과, 농가명단 공개 등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Q & A

Q. 조류 인플루엔자(AI) 는 어떤 질병인가요?

A. AI(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I는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고,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AI에 감염되면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오리의 경우 중 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 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 AI 가 사람에게도 감염되나요?

A. 닭·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였을 때에서야 비로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①감염된 닭·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②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③감염된 닭·오리와 같이 놀았거나, ④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Q. 만약 AI에 걸린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었을 경우 이상이 없나요?

A. AI 발생이 확인된 농장의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닭·오리 등 가금을 살처분·매몰하게 되므로 AI에 감염된 닭, 오리 및 계란이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AI에 걸린 닭·오리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 합니다(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또한 AI 바이러스는 끓일 경우(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사멸함)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상적인 식생활 습관상 닭고기·오리고기는 날로 먹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Q.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요?

A.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하고(144가지) 또한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의 폭발적인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임시방편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장기적인 방역관리 측면에서 볼 때 권장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Q.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A. AI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달걀·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레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Q. 가축 사육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은 모든 축산농가가 지켜야 하나요?

A.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농가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서 등록대상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및 50㎡를 초과하는 양돈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등록대상 농가가 아니더라도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밀집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Q. 가축 사육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 의한 사육시설 면적 중 무허가 축사는 제외되나요?

A. 축산업 등록은 축사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면적을 등록한 것이므로 무허가 시설도 사육시설 면적에 포함됩니다.

06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요



현재 우리의 농촌은 청장년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속에서 농산물 시장개방도 확대되어 소득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도시소비자들은 농촌에 대해 맛있고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존하여 찾아가고 싶은 공간, 노후에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삶과 휴양의 공간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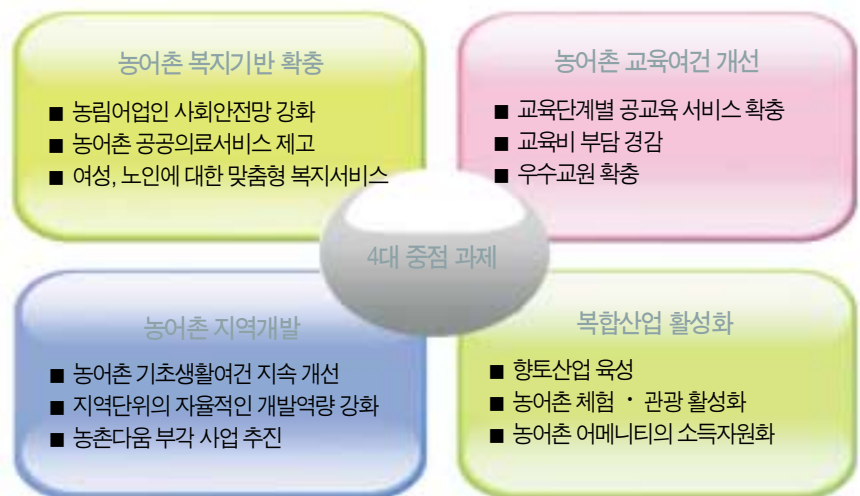
도시민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등 주민들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발전은 물론 도시에 비해 뒤쳐진 농촌의 주거, 의료, 문화, 교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분야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민 수요 충족시키고 농촌주민 삶의 질 ‘업그레이드’

정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농촌발전, 『농촌 Global Top 10』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촌의 산업발전기반 확충(일터), 농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삶터), 아름다운 농촌조성(쉼터)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산어촌주민의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촌 관련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오지종합개발사업, 낙후지역에 대한 신활력 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농촌의 삶터 조성 위한 종합적 농촌 지역개발 읍면·시군 연계 프로그램 체계화

도시에 비해 낙후돼 있는 농촌의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읍면, 시군을 연계하고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지역개발 사업을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을단위에서는 녹색 체험마을 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특색있는 마을권역 1,000개를 대상으로 권역당 70억원을 지원 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읍면지역에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면정주권개발 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도로, 문화복지 시설 등 기초생활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해 관계 부처 협력 의료·연금·여성·노인 등 취약 분야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모든 관계부처가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삶의질 향상법을 근거로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각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통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20조 3,00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제1차 삶의질향상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보완·반영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농촌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은 물론, 의료보험과 연금 지원, 여성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교육 여건 개선방안 등 15개 부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위해 복합생활공간 조성 농어촌 종합정보포털 운영, 다양한 정보 제공

농촌이 농업인 만으로는 활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래의 농촌은 모든 국민에게 삶과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활력적인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담양 수북·의령 양천·제천 송학·상주 녹동 등 4개 지역에 농촌주민과 농촌에 이주한 도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복지·문화 서비스가 충실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모델 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전국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정주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원생활, 농지은행, 주택정보 등 7개 분야 39개 콘텐츠로 구성된 농어촌종합정보포털 (<http://www.nongchon.or.kr>)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분야 육성으로 활력증진, 향토지원,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도

농촌 주민의 소득을 올려주고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분야가 육성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양한 농산업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가 필요합니다. 벼농사 외에 시설원예, 축산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간척지를 활용한 축산단지, 발작물단지 등 복합농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에 산재돼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목공예, 경관, 역사·문화자원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원조사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육성가치가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적으로 규모화가 필요한 곳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70개 시·군이 나뉠대로 지역의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3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시·군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잘하는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사1촌 통해 농촌경험 공유토록 마을별 사무장제 도입 체험마을 내실 운영

도시민이 농촌과 친근해지려면 자주 농촌을 방문하고 농촌의 여러가지 문화,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2005년까지 123개, 2006년 67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사무장제도를 도입하여 마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의 협약체결 후 사업을 수행중이며 농촌체험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기업과 농촌이 하나가 되는 1사1촌 운동은 2006년 11월말 현재 1만4,765건의 자매결연, 1,844억원 수준의 교류활동을 이룩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945억원, 일손돕기 336억원, 농촌체험 및 기증 281억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Q & A

Q.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2005 ~ 2009년) 과 농업 · 농촌 종합대책 (2004 ~ 2013년) 은 어떤 관계인가요?

A.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은 2004년 2월 발표한 농업 · 농촌종합대책중 농외 소득 분야와 농촌대책을 구체화한 5년단위 중기계획입니다.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은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삶의질 향상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법정 계획입니다. 또한,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융자 재원 중 국비 7조 6,862억원(38%)은 농업 · 농촌종합대책의 투융자 계획인 119조 투융자계획에 이미 반영된 재원입니다.

Q.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 계획의 추진에 따라 2007년에는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A. 먼저 농산어촌 복지 · 교육분야는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이 연간 최대 28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만1천원이 늘어납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의 사망시 보상금이 3,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 늘어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취학이 유예된 만 6세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2만6천명에 대해 학자금이 전액 무이자로 융자 지원 됩니다.

Q. 전원마을 조성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A. 농촌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민을 주 입주자로 하는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마을 기반시설 설치를 보조 지원합니다.

정부 보조금액은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규모에 따라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하며, 마을 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등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축비에 대해서는 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저리(3~4%)융자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원마을 조성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30%

Q. 농촌경관을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선, 앞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촌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에 개발지역에 대한 농촌경관 수준을 평가하고 농촌경관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일정 지역단위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농촌경관 개선이 가능하도록, 필요시에 농촌경관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농촌경관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합니다.

농촌주민들의 자발적인 농촌경관 보전·형성·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촌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주민들의 농촌경관 개선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가칭) ‘농촌어메니티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관작물에 대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원대상과 작물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우수한 농촌 경관자원을 찾아내어 홍보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민신탁운동 등과 연계하여 국민들이 농촌경관 개선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신활력 지역이란 어떤 곳을 말하나요?

A. 신활력 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마목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지정하는 낙후지역”을 말합니다.

낙후지역 선정 고시현황 (2004.9.3)

시·도	시·군수	시·군 현황
인천	2	옹진군, 강화군
강원	12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충북	5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충남	3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전북	9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전남	17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완도군, 담양군, 해남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경북	13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경남	9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고성군
계	70개	

Q.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의 내용은?

A. 신활력 사업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품목을 프로젝트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낙후도에 따라 매년 20 ~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역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혁신역량 강화, 소득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1사1촌이란?

A. 1사1촌 운동이란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은 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고 기업은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및 직원들의 복지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류 형태는 농산물직거래, 일손돕기, 농촌체험 및 관광, 마을기증 및 발전기금 제공, 봉사활동 및 시설지원 등이 있습니다.

1社: 기업(대기업의 경우 부서 별 또는 사업장 단위 가능), 소비자단체, 사회·종교단체, 행정기관 등을 말합니다.

1村: 부락(영농회) 1개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체의 규모 및 지원사업 등을 고려한 면 단위 마을입니다.

